

대부신청서

○ 재산의 표시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임진강 주상절리 일원
- 대상 재산의 표시

구분	내용	대부료 예정가격 *최저입찰금액	대부기간
카약 체험 시설	계류시설 1식(38㎡), 카약 40ea, 매표소(컨테이너) 2ea(3×6×2.6m), 장비보관소(컨테이너) 2ea(3×9×2.6m), 패들 100ea, 헬멧 100ea, 구명조끼 100ea, 구조용로프 8ea	금1,508,147원	2024.5.13.~ 2024.11.27. (총199일간)

- 대부(사용)기간 : 개시일로부터 1년내 199일간
- 대부(사용)목적 : 연천군 세계지질공원 내 수상레저시설 운영
- 대부(사용)료 : 귀 군이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 : 귀 군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연천군수 귀하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 위치 :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임진강 주상절리 일원
- 대상 재산의 표시

구분	내용	대부료 예정가격 *최저입찰금액	대부기간
카약 체형 시설	계류시설 1식(38㎡), 카약 40ea, 매표소(컨테이너) 2ea(3×6×2.6m), 장비보관소(컨테이너) 2ea(3×9×2.6m), 패들 100ea, 헬멧 100ea, 구명조끼 100ea, 구조용로프 8ea	금1,508,147원	2024.5.13.~ 2024.11.27. (총199일간)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하는 사람 연천군수를 “허가자”라 하고, 대부받는 사람을 “사용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이 계약에 의한 재산은 연천군 세계지질공원 내 수상레저 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대부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199일간)

제3조(대부료) 연간 대부료는 ₩ 원(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로 계산한다.

제4조(납기 등) 대부료 납기는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보존책임 등)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② “사용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가입) “사용자”는 본 계약 기간 중 “허가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건물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허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제7조(금지행위) “사용자”는 “허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사용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 대한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자”가 계약후 년 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허가자”가 인정할 때
3. “사용자”가 한국에 주소 또는 거주가 없게 된 경우에 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4. “사용자”가 체납처분·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5. “사용자”가 “허가자”로부터 공유재산의 매수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사용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허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자”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배상액 등) 제8조제1항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허가자”가 결정하고 “사용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해제·해지요구) ① 본 계약 기간 중에 “사용자”가 해제·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자”가 해제·해지하는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해제·해지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허가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부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허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허가자”의 입

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허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대부기간의 연장) 대부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기간만료 1월 전에 다시 대부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변상금의 부담) 대부기간 만료 후에 “사용자”가 계속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사용자”가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허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이견의 결정) “사용자”가 본 계약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허가자”의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각각 작성하여 “허가자”와 “사용자”가 기명날인하고 1통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대부하는 사람(허가자)

연천군수 김 덕 현 (인)

대부받는 사람(사용자)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행각서

- 업체명 :
- 대표자 :
- 주민(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상기 본인은 당해 시설을 대부함에 있어 대부허가조건, 기타 유의사항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연천군에서 정한 허가조건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만일 이를 위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본인이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24. . .

각서인 : (인)

연천군수 귀하

청 럽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귀 군이 시행하는 수상레저시설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공고문에서 정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제한처분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에서부터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군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군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서약자 상호 :

성명 : (인)

주소 :

연천군수 귀하

제소전 화해 동의서

귀 군과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설물의 명도사유 발생 시에는 명도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대부계약에 의거 귀 군이 요구할 경우 귀 군을 신청인, 본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연천군 관할법원에 제소전화해조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겠으며, 화해기일에 화해결정을 정히 받을 것을 서약하며, 이 제소전 화해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연천군수 귀하